

한국전력 당진화력건설처 “초일류기업 인증 획득”

한국전력 당진화력건설처는 '94년도 착공 이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전소 건설”의 사업소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의 전근로자가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으로 지난 10월 26일에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초일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당진화력발전처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충남 당진군 대호 방조제 일원에 141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연인

원 520만명, 총공사비 2조 9천 여억원을 투입, 50만 KW급 4기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200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 현장의 안전관리 기본은 잠재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물샐 틈 없는 안전점검과 건설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무재해 3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한전기공(주) 일사사업소 “무재해 10배 달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열병합 단지의 일산복합화력발전처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기공(주) 일사사업소는 무재해 10배를 달성하고 10월 27일 무재해 10배달성

행사와 15배 달성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형국 한전기공(주) 사장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 현장 직원이 참석한 가운

데 치뤄졌다.

김형국 사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안전제일의 마인드를 확산하여 안전의식을 한단계 승화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전기공(주)는 93년 3월 26일 무재해를 시작하여 전직원의 높은 안전의식과 활성화된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실시한 것으로 건설서비스 업종에서 달성하기 힘든 무재해 10배 달성의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99년 3/4분기까지 사망자수 감소, 재해율 증가

노동부의 '99년 3/4분기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3/4분기까지 산업재해는 사망자 1,693명으로 전년동기 1,756명보다 63명(3.59%) 감소하였으나, 재해자(재해율)은 전년동기 38,970명(0.49%)보다 252명(0.03%p) 증가한 39,222명(0.52%)을 기록하였다.

경기회복에 따른 공장가동률 증가 등의 원인으로 그동안 감소 추세이던 재해율이 '97년

6월이후 2년2개월만인 '99. 8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는 뇌·심질환자가 전년동기 324명 대비 129명(39.8%) 증가한 453명이 발생하는 등 총 1,187명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1,022명에 비해 165명(16.1~10) 증가하였다.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 증가 등의 이유로 개인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이완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환

위기 이후 실직한 일용근로자 등의 진폐검진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진폐로 판정받게 된 재해자도 증가한 상태이다.

그러나 재해율이 증가한 반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9년 9월 현재 손실액이 4조 7,364억원으로 전년동기 5조 6,696억원보다 9,332억원(16.46%) 감소하였다.

이는 사망자수 감소 및 임금 감소 등에 따른 산재보상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서식 단일화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중복된 규제로 민원을 샀던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 서식이 단일화한다.

19일 산자부는 석유화학시설 사업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소방법 및 사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각각의 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통합된 안전관리규정 및 예방규정을 작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산자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2항의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부 산업

안전보건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부 제22조 소방예방규정 등의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는 각 법률 규정내용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석유시설 사업자가 안전밸브를 수입할 때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와 검정을 따로 받던 것을 폐지하고 각각의 주무부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성능인증만 받으면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사업주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한 현장중복점검을 단일화하지는 핵심쟁점사항은 제외돼 있어 중복점검에 대한 사업주들의 개선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가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소방소 등이 따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과 시간낭비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로 의결,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노동부는 지난 10월 14일자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진폐 합병증으로 종전 폐결핵 등 7가지에서 폐암(원발성 폐암으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걸린 경우도 인정하여 요양이 가능 ▲임시 건강진단 사유가 종전 진폐근로자의 질병 악화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앞

으로 분진작업근로자의 진폐가 의심되거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확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근로자채용시의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1차 건강진단과 1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는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효율적으로 실시 ▲건강진단기관의 진폐 판독위원을

진단방사선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3인으로 위촉하여 진폐진단이 전문성 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자가 진폐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업무를 대행하는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전문은 본지 당월로 “안전관련법”란에 소개되었다.

Y2K문제 나부터 최종점검 해야

밀레니엄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최근 모든 매스컴등에서 들려오는 “Y2K 문제”이다.

얼마전 “일반 PC도 Y2K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보도내용도 있었다. Y2K문제는 컴퓨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가전제품, 의료기구 등 그 형태는

다양하여 우리 가정에까지 그 가능성은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만일의 발생을 대비하여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최종점검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지나친 낙관을 모두 경계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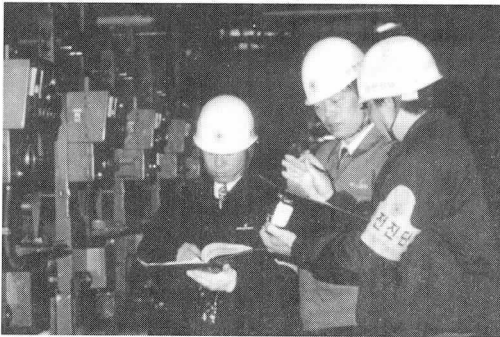
이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Y2K문제에 대해 최종 점검해야 할 때이다.

Y2K문제에 대비한 “Y2K 국민 대처요령”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http://www.moct.go.kr>)

대한산업안전협회 해외 사업장 안전진단 호평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국 북건성에 위치한 (주)진웅으로부터 매년 안전진단과 안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다. 그동안 안전관리가 후진성을 면치못했던 (주)진웅은 지

전교육을 실시해 줄것을 요청받았다.

(주)진웅은 지난 4월 13일 부터 6일간 김영신 기술자를 팀장으로

난번의 안전진단을 계기를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안전진단과 안전교육을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35년의 안전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타사업장에도 보급한다는 계획아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및 장기실업자 생계지원 확충 등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그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보완하여 근로자의 고용과 직업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련을 상향조정하여 제조활성화를 통한 실업예방에 적극 기여 ▲고용유지지

원금을 지원받는 고용유지조치 중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고용유지방법인 훈련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이 개별 사업장에 변경지원되는 등의 과도한 지원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확대 ▲피보험자가 자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 ▲우선 지원대상기업 뿐만아니라 대규모기업의 사업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의 지원혜택 부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고는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수급기간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은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이전에서 종료될때까지로 완화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대상의 기준을 구체화되 고의로 퇴직금 등을 연기하여 수령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다.